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해 외 진 출 기 업 의 국 내 복 귀 지 원 에
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기업의 정책수요를 반영한 국내복귀기업의 인정범위 확대를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“국내사업장 신설·증설의 정의”를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사업장 신설·증설의 정의 확장(안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)

- 1) 현행 사업장의 신설·증설에 대한 정의는 대규모 공장부지와 건물을 확보하고 향후 빈 공장 내 신속한 생산라인 신설·증설을 통해 급변하는 세계 수요에 대응하는 장치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서 장치산업에 속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기업 인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
- 2) 해외진출기업이 기존에 보유하던 국내공장 또는 사업장 내에 생산설비를 도입하는 경우도 국내사업장의 신설·증설로 인정함
- 3) 사업장의 신설·증설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대규모 장치산업 등 고부가가치 해외진출기업들의 국내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○○○○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06. 22. ~ 08. 0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기존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제조시설(시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)
을 설치하는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개정내용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복귀기업 선정부터 적용
한다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사업장의 신설·증설 등)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의 국내 신설·증설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로 한다. 1.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. ~ 다. (생략) <u><신설></u> 2.·3. (생략) ②·③ (생략)	제3조(사업장의 신설·증설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 ----- --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라. <u>기존 공장 또는 사업장 내</u> <u>제조시설(시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)을 설치하는 경우</u> 우 2.·3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	
연 락 처	(044) 203 - 4069